경고: 선거 운동 금지!

위반 시 벌금 및/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.

장소:

•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의 바로 근처 또는 투표소 입구, 가두 투표 또는 수거함의 100 피트 이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:

금지되는 활동:

- 어떤 사람에게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하도록 요청하지 *마십시오*.
- 후보자의 이름, 이미지 또는 로고를 전시하지 *마십시오*.
- 투표지 수거함 접근을 방해하거나 그 주변에서 배회하지 마십시오.
- 투표소, 투표 센터 또는 투표지 수거함 근처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자료나 가청 정보를 제공하지 *마십시오*.
- 발의안, 주민 투표, 소환 또는 후보자 지명을 포함하는 청원을 유포하지 *마십시오*.
- 후보자의 이름, 이미지, 로고 및/또는 어떤 후보자나 투표 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가 들어 있는 의복 (모자, 셔츠, 사인, 버튼, 스티커)을 배포, 전시 또는 착용하지 *마십시오*.
-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전시하거나 유권자에게 말하지 *마십시오*.

위에 요약된 선거 운동 금지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8부 제4장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